

#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0차/제정 2020-07-0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디지스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목적이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여, 그 구체적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또는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는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은 특정된 자의 인권침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이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을 가한 혐의가 있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7. “참고인”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9.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0. “디지스트 구성원”은 디지스트의 학칙 및 원규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디지스트의 학칙 및 원규의 적용을 받는 모든 디지스트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디지스트의 구성원은 인권친화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디지스트의 목적에 맞게 인권침해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제1항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를 독려하며, 총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등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①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센터에 사전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와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조(비밀유지)** 인권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 센터 소속 직원 및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참여한 자는 모두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제2장 조직

**제9조(구성)**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교육, 정책 마련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충 상담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의 상담 및 조사
2. 구성원 내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방지 및 처리
3. 인권 증진 및 성폭력 관련 교육 및 예방
4. 기타 인권 관련 제반 업무

## 제3장 사건접수 및 조사

**제11조(신고 및 상담)**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상담내용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센터에서 조사 및 심의하여 종료된 사항인 경우
3. 제11조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총장에게 보고한 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을 둘 수 있다.

- ② 옴부즈맨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교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③ 옴부즈맨에 대해 디지스트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조사가 개시되면 옴부즈맨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옴부즈맨은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위원회 회부 및 중재)** ①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 심의를 위해 제17조의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중재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센터에 인권침해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예비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

고, 내부위원은 각 구성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율을 배정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발생 또는 안전 발생 시에 구성하며 심의할 사안의 성격을 반영하여 예비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장 혹은 센터장이 지명한 직원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기피, 교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부(과)나 부서의 교수, 연구원, 일반직원 및 학생 등 업무 또는 생활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제척·기피 사유에 의해 위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⑥ 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인권침해 등 피신고인의 징계 요청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및 조치

4.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회의)** ① 센터장은 신고된 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결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센터 소속 직원 및 옴부즈맨 등 당해 사건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수급(책임급) 이상의 직원(교원, 연구원 및 일반직원) 2명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 2명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의 기각)**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 피고신에게 법령, 학칙 및 원규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를 첨부하여 피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등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등과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제25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즉시 당사자와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의무)**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개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인권교육 등

**제29조(인권교육)** ① 제4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센터는 전문가 초빙강연 등 디지스트 구성원의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의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

**제30조(관계기관 등 협력의무)** 디지스트 내의 모든 관계기관 및 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가명을 사용한 절차진행)** ①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거나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때에 가명(假名)을 사용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센터장은 이로 인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절차의 중단)** 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접수

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33조(타 원규와의 관계)**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요령」 을 적용한다.

### 부칙 (2020.07.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권침해의 유형)

<별지 제1호 서식> (사건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진술서)

[별표 1]

## 인권침해의 유형

인권침해의 유형	세부 인권의 침해 행태
인격권 침해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학업권 침해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용, 자퇴 강요 등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체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신체적 침해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등
근로권의 침해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 등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의 권한 침해 등
기 타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일자	
접수 담당자	

1. 신고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름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yyyy-mm-dd
소 속			학번 (사번)		
구분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피 해 자	이름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yyyy-mm-dd
	소 속			학번 (사번)		
	구분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 고 인	피해자와의 관계	친구 <input type="checkbox"/> 선배 <input type="checkbox"/> 후배 <input type="checkbox"/> 지도교수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피신고인 (※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

이름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yyyy-mm-dd
소 속			학번 (사번)		
구분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동기 <input type="checkbox"/> 선배 <input type="checkbox"/> 후배 <input type="checkbox"/> 지도교수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부하 <input type="checkbox"/> 모르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이성친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4. 피해유형(복수응답 가능)

인격권 침해     학습권 침해     연구권 침해     신체적 침해





1.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 작성일시:

3. 사건경위(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라는 조치 사항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귀중**